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11 .19.

개정 2016. 03 .08.

개정 2016. 10 .31.

개정 2019. 05 .01.

개정 2021. 10.29.

개정 2022. 01. 17.

개정 2023. 04. 03.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운영 및 주재원의 역할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신규 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03. 08, 2021.10.29., 2023.04.03.>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지역에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주재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03. 08, 2023.04.03.>
 - ② 이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03. 08, 2023.04.03.>
-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재원"이란 지역 정보보호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인사명령을 받아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상시 근무하는 진흥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 05. 01> <개정 2021.10.29>
 - 2. "지역센터장"이란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주재원 중,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05. 01> <개정 2021.10.29>
 - 3. <삭제 2021.10.29>
 - 4. "운영기관"이란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 정보보호 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05. 01, 2021.10.29., 개정 2023.04.03.> 5. <삭제 2023.04.03.>
 - 6. "정보보호협의회"란 지역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정보보호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협의회로 정보보호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신설 2021.10.29.><개정 2023.04.03.>
 - 7. "정보보호지원센터"란 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간 협약을 통해 지역에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신설 2023.04.03.>
 - 8. "협약금"이란 진홍원,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지방자치 단체 부담금, 운영기관의 부담금 등을 말한다.<신설 2023.04.03.>

제2장 주재원의 책무

- **제4조(주재원의 책무)** ① 지역센터장은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사업운영, 정보보호 활성화, 진흥 업무 등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 05. 01, 2021.10.29, 2023.04.03.>
 - ② <삭제 2021.10.29>
 - ③ 주재원은 지역센터장의 통제 하에 정보보호지원센터 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등 지역센터장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9. 05. 01> <개정 2021.10.29>

제5조<삭제 2023.04.03>

제6조<삭제 2016.03.08>

제7조<삭제 2023.04.03>

제8조<삭제 2016.03.08>

- 제9조(업무 인수인계) ① 진흥원의 인사에 따라 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신임 지역센터장과 전임 지역센터장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1부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 05. 01, 2023.04.03.>
 - 1. <삭제 2023.04.03.>
 - 2. <삭제 2023.04.03.>
 - ② <삭제 2023.04.03.>

제10조<삭제 2023.04.03>

제11조<삭제 2019.05.01.>

제12조<삭제 2023.04.03>

제13조<삭제 2016.03.08>

제3장 감사

제14조<삭제 2016.03.08>

제4장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기관 선정

- 제15조(모집 공고) ① 진흥원은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계획에 따라, 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정보보호지원센터 신규 구축·운영을 위한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 공문 형태로 안내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 ② 제1항에 따라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04.03.>
 - 1. 사업 목적 및 내용
 - 2. 세부 구축·운영 계획
 - 3. 사업 신청자격, 방법, 절차 및 일정
 - 4. 사업 신청 및 제안 안내
 - 5.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6. 신청서
 - ③ 제1항에 의한 모집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제16조(신청서 등의 접수) 진흥원은 제15조에 의한 모집 공고에 참여하는 자가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맞춰 신청서 등을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 **제17조(신청서 등의 평가)** ① 진흥원은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등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05. 01, 2023.04.03.>
 - ② 신청서 등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 실사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 ③ 진흥원은 신청서 등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3.04.03.>
 - 1. 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3.04.03.>
 - 2. 평가위원회는 진흥원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23.04.03.>
 - 3.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다.
 - 4. 평가위원은 위원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장은 위원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의 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④ 선정 기준 점수는 최종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하며, 신청 기관의 득점 순으로 순서를 정한다. 단,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 처리한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 **제18조(선정)** ① 진흥원은 제17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1.10.29, 2023.04.03.>
 - ② 진흥원은 협약 대상 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차점 기관을 협약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 ③ 진흥원은 협약 체결 전, 협약 대상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등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제안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제5장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협약 체결

-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진흥원은 협약 대상 기관과 제18조에 따라 선정 통보가 이뤄진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10.29, 2023.04.03.>
 - 1. 사업명, 사업기간, 협약금, 협약 당사자<개정 2023.04.03.>
 - 2. 사업 목적 및 기관별 역할
 - 3. 협약금의 관리 및 사용
 - 4.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개정 2023.04.03.>
 - 5. 협약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6.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7.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약 대상 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가 이뤄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약 대상 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업수행계획서
 - 2. 법인인감증명서
 - 3. 협약금 전용통장 사본
 - 4. 사업자등록증
 - 5. 협약금 지급 신청 공문
 - 6. 협약금 청구서
 - 7. 협약서, 표준개인정보처리계약서
 - 8. 청렴계약이행각서
 - 9. 기타 진흥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신설 2023.04.03.>
 - ③ <삭제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진홍원,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간 상호 합의하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 1개월 전에 변경 사항을 진홍원에 신청 또는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 ② 아래 각 호 중, 제1호의 승인사항은 진흥원이 승인한 날부터, 제2호의 통보사항은 진흥원이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2023.04.03.>
 - 1. 승인사항
 - 가. 협약기관의 변경<개정 2023.04.03.>
 - 나. 최종 목표의 변경
 - 다. 최초 협약한 협약금 중 비목간 변경<개정 2023.04.03.>
 - 라. <삭제 2023.04.03.>
 - 마. 최초 협약한 협약금의 사업운영비, 연구개발비의 20%이상 증액<개정 2023.04.03.>
 - 바. 협약금 관리 계좌의 변경<개정 2023.04.03.>
 - 2. 통보사항
 - 가. 협약기관의 주소(연락처), 명칭의 변경<개정 2023.04.03.>
 - 나. 최초 협약한 협약금 중 세목간 변경<개정 2023.04.03.>
 - 다.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③ 진흥원은 협약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협약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 제21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1. 협약금의 용도 외 사용, 횡령, 보고서의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개정 2023.04.03.>
 - 2.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협약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23.04.03.>
 - 4. 협약기관의 부도·법정관리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04.03.>
 - 5.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개정 2023.04.03.>
 -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진흥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기관의 장에게 협약금의 집행 중지 요청,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제6장 협약금의 지급 및 정산

제22조(협약금 지급) 진흥원은 제19조에 따른 협약 체결 이후 협약금을 운영기관에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기관의 협약금 집행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3.08] <개정 2021.10.29., 2023.04.03.>

- 제23조(협약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에 지급된 협약금에 대해 운영기관의 장에게 협약 사항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 1. 국·공립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②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협약금을 사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되고 있는 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 ③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협약금을 사용함에 있어, 협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 목적 외로 협약금을 집행한 경우 진흥원은 운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 ④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협약금을 사용함에 있어, 협약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고 정산은 당해연도별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3.04.03.>
 - ⑤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 중 발생한 협약금 이자 및 불용금액은 사업종료 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3.04.03.>
 - ⑥ <삭제 2023.04.03.>
 - ⑦ <삭제 2023.04.03.>
 - ⑧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협약금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제24조 <삭제 2023.04.03.>

- 제25조(협약금 정산) ① 진홍원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협약금 지출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진홍원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 ② 진흥원은 협약금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③ 진흥원은 운영기관이 협약금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실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제7장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결과 보고

- 제26조(사업 결과의 보고) ① 지역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진도점검 시점 또는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진도 실적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3.04.03.>
 - ②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내에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2023.04.03.>
 - ③ 최종보고서에는 당해연도 사업실적, 협약금 사용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진흥원은 주요 항목을 선정하여 운영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04.03.>

[본조신설 2016.03.08]

- **제27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진흥원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2023.04.03.>
 - ② <삭제 2023.02.00.>
 - ③ 진흥원은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을 서면, 발표, 현장 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진행 할수 있다.<개정 2019.05.01., 2023.04.03.>

제28조 <삭제 2023.04.03.>

제8장 정보보호협의회 구성·운영

제29조(협의회 구성) ① 지역센터장은 정보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 1. <삭제 2023.04.03.>
- 2. <삭제 2023.04.03.>
- 3. <삭제 2023.04.03.>
- 4. <삭제 2023.04.03.>
- 5. <삭제 2023.04.03.>
- ② 정보보호협의회 위원은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3.04.03.>
- ③ 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은 지역센터장이 맡으며, 주재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30조(협의회 운영) ① 정보보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호 발전 계획 수립
- 2. 지역 기반 정보보호 대응 체계 구축
- 3. 지역전략산업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 4. 지역 기반 정보보호 인재 양성 계획 수립
- 5. 기타 지역 기반 정보보호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개정 2023.04.03.>
- ② 지역센터장은 정보보호협의회 운영 결과를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4.03.>
- ③ 진흥원은 각 지역 정보보호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정보보호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04.03.>

[본조신설 2021.10.29]

부 칙<2014. 11. 0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3. 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16년 사업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이전에 공고된 사업의 사업비 편성·집행, 사용기준, 정산 등 사후관리 및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등은 협약서 또는 협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16년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05. 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10. 29>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1. 17>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4. 03.>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23.04.03.>